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인쇄인

황인구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계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2000년 10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42호

농민 자가규격품 취급 기준 간소화 전망

판매대상 비치 및 품질검사조항 삭제토록 규개위 의결

계약재배 및 수매 정책 부재속 “사상누각” 불과 지적도

생산농민들의 자가규격품 취급 기준과 관련 절차상의 번거로운 규제사항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입안예고중인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9월1일 규개위 심사결과에 따르면, 농민자가규격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약용작물(한약재) 생산 농민은 거주지 읍면 동장의 생산자 확인을 받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되, 농민이 지방식의약품에 직접 신고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도록 복지부에서 별도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약규격품 품목신고서” 및 “약용작물재배확인서”도 통합하여 “한약재 규격품 취급신고서”로 간소화 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또한, △농민이 제조한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보관의무 △농민자가규격품 판매대상 비치 및 기록의무조항 △판매업소의 자가규격화 금지 △한약재 유통일원화 등을 새로운 규제사항으로 간주해 이를 삭제하고 복지부에 시행토록 했다. 기재사항도 생산지명, 품목명, 경작지만 기재토록 허용하고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연중 종사일수 등 번거로운 사항은 모두 삭제토록 하라는 게 규개위 의결방침.

이는 그동안 국산한약재의 자유로운 판로허용을 주장해 왔던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개위 심사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원료의약품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성 검사를 국내에서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 국제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국산 한약재에 대한 신용도를 떨어뜨릴 공산도 크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한약재로는 수입이 제한돼 있는 수급조절품목 조차도 식품원료로는 무제한 반입돼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개위 심의결과 대로 시행될 경우 수입한약재의 불법유통을 더욱 부채질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측은 이번 규개위 심사결과에 대해 “지난 4월 규개위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물론 한약재관리규정의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재심의를 청구해 놓은 상태여서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한약재 규격화 제도는 다시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약재 고품질화와 유통구조개선을 목표로 한약재 규격화제도를 입안 지난 97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국내생약농업 현실과 한약재 유통관행을 무시한 채 시행된 규격화제도는 그동안 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정착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특히 한약재 품질의 안전성 확보 측면과 생산농민의 자유로운 판로확보라는 두가지 각각 중요한 실마리들이 언젠가부터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서 밀고 당기기를 시작한지 벌써 여러해. 생약협회 등 생산자단체 측은 그

동안 “유통일원화라는 명분으로 생약생산 농민들의 직거래를 제한할 경우 날로 위축돼 가는 국내 생약생산기반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농민들 스스로에게 부가가치창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농민 자가규격허용’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그같은 맥락에서 이번 규개위 심사결과는 상당부분 만족할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약재가 산지로 유입돼 국산으로 둔갑 판매 행위가 비밀비제한 상황에

서, 국산한약재에 대한 생산자확인 제도와 품질검사의무 사항을 삭제토록 할 경우 실제로는 농민보다는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중간상인들, 그리고 수입산을 식품으로 반입, 국산과 섞어 파는 상인들에게 그같은 불법유통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주변의 우려 또한 간과할 수만은 없다.

또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산한약재가 국산으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국의 WTO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국내 생산농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동시에 중국산 한약재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국내생약농업에 애정을 갖고 있는 뜻있는 많은 사람들은 “규격화 시행과정에서 세부조항 하나 하나에 대한 허용여부를 놓고 농민권익 보호를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수요예측을 통한 하한가 계약재배, 국내생산 한약재에 대한 일괄수매제도 등 국내 생약농업 육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이 더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생약농업분야에 대한 기본정책 부재 속에서는 어떤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정희〉

천마 등 식품원료사용 허용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생약산업 활성화 기대

그동안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던 천마를 비롯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부원료로서 최소량만 사용이 허용됐던 하수오에 대한 식품원료 사용 규제가 9월1일부터 전면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 지난 9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대신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별도 고시하는 한편, 이에 포함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식용근거자료 및 안전성근거자료 등을 기준으로 식품원료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완화는 그러나 식품용 수입한약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국산한약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분야에 대한 활성화 기대와 함께 동시에 식품용 한약재 반입

가능 품목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식품제조·가공 등의 주원료 또는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은 다음과 같다.

①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고수, 과라나, 국화, 기름골, 꿀풀, 나무딸기, 나문재, 나한과, 노니, 눈꽃동충하초, 다색벚꽃버섯, 당아욱(분홍아욱), 덩굴월귤, 띠(백모근), 라벤더, 레몬그라스, 레몬밤, 레이디스맨틀, 루이보스, 마리골드, 마시멜로(양아욱), 망초, 모로헤이아, 물냉이, 민들레,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밀크씨슬, 바나바, 배초향, 병꽃풀(연전초), 보라버섯, 붉은토끼풀, 블랙베리, 비자나무, 뽕나무(오디나무), 뽕나무버섯, 사철썩(인진호,인진), 서양민들레, 서양자초, 선인장, 세이지, 소나무, 속단, 쇠뜨기, 쇠비름, 수국차(감차, 감로차), 수영, 스타아니스, 스타비아,

시계꽃, 쓴박하, 아니스, 아로니아, 아티초크, 애기수영, 야마유리, 엉겅퀴, 연(연근), 올방개, 일세버섯, 잣나무, 장미, 저령, 제비꽃, 제비콩(백편두), 좁쌀풀, 진득찰, 진피, 참중나무, 천마, 초석잠, 캐러웨이, 카모미일, 피나무, 하수오, 해바라기, 향유, 헛개나무(지구자), 호로파, 황기, 황소개구리, 히비스커스, 히습등

② 부원료로 사용가능한 동·식물

감나무, 구관, 금불초, 노간주나무, 노루귀, 녹각, 녹용, 녹용각, 단삼, 달개비, 독활, 만삼 맥문동, 배초향, 복령, 봉출, 붉은토끼풀, 사상자, 사인, 산사자, 산수유, 산조인, 삼백초, 삼주(백출), 창출, 석창포, 쇠무릎(우슬), 야로, 약모밀(여성초), 연(연자육), 오리나무, 옥수수(수염), 울금(강황), 원지, 인동, 작약, 적작약, 쥐오줌풀, 지황, 천궁, 측백나무(측백엽), 치자나무, 카스카라 사그라다, 토사자 등

기 권 안 내

- “토착 유전자 보호해야 한다” 3면
- 〈소개〉 한국농업전문학교 특용작물과 3면
- “울 산수유 풍작” 4면
- 「황기 일관작업기 개발」 5면